

##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7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1지역1명품육성기금과 농어촌개발기금으로 분리운용중인 2개 기금사업을 농어촌개발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
- 농업투자 비용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융자한도액 일부를 상향조정하고 융자금의 금리를 인하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주요골자

- 1지역1명품육성사업을 농어촌개발기금 지원대상사업에 포함(제5조)
  - 「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」의 폐지 및 기금통합
- 사업비지원 한도액중 일반융자금 상향조정(제7조제2항제2호)
  - “300만원 이상 1,000만원 이내”를 “2,000만원 이내”로 함
- 융자금의 금리를 “연 3%”에서 “연 2%”로 인하 함(제8조제2항)

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##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4. 1지역1명품 육성사업

제7조제2항제2호중 “300만원 이상 1,000만원 이내”를 “2,000만원 이내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중 “연3%”를 “연2%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조례의 폐지) ①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 (경과조치)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하며, 모든 채권과 예금은 농어촌개발기금으로 귀속한다.

②이 조례 시행전 용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기융자된 지원금은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대상사업) 개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5조(대상사업) . . . . 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1지역1명품 육성사업</u></p>
<p>제7조(사업비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운용자금은 농어민, 작목반 등 농어민 조직은 <u>300만원 이상 1,000만원 이내</u>로 한다. 다만,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,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3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사업비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. . . . 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. . . . <u>2,000만원 이내</u> . . . . .</p>
<p>제8조(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)① (생략)</p> <p>②융자금의 이자는 <u>연3%</u>로 하되,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기금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</p>	<p>제8조(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. . . . . <u>연2%</u> . . . . .</p>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

- 第133條(財産 및 基金의 設置)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保有하거나, 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設치할 수 있다.
- ②第1項의 財産의 保有, 基金의 設置·運用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定한다.
- ③ (생략)

### □ 지방재정법

- 第110條(基金의 運用등) ①地方自治법 第133條의 規定에 依하여 設치하는 基金은 條例로 定하는 特별한 目的을 爲하여 적당하고 효율적으로 運用하여야 한다.